# 휴학, 복학 처리 절차

URL: <a href="https://computer.kongju.ac.kr/bbs/ZD1140/1410/251293/artclView.do">https://computer.kongju.ac.kr/bbs/ZD1140/1410/251293/artclView.do</a> 작성일자:2022.03.02

#### ◎ 휴학 처리 절차

- 1. 군휴학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
- 가. 포털에 군휴학 신청
- 나. 포털에 증빙서류(입영통지서) 필수 첨부 / 2024.1.8.자부터 포털시스템에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생년월일 비번이 걸려있는 문서 첨부 불가. 이 경우 인쇄 혹은 캡처한 자료로 업로드 바람
- 다. 서류 확인 후 승인
- 2. 군휴학 입영통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
- 가. 포털에 일반휴학 신청
- 나. 입영통지서 나오면 바로 포털에 군휴학 신청
- 다. 서류 확인 후 승인
- 3. 일반휴학 학기 종료 후 다음학기부터 휴학
- 가. 포털에 일반휴학 신청
- 나. 휴학사유 등을 일괄 조사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연락 불필요, 학과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대기
- 4. 일반휴학 해당 학기 중 휴학
- 가. 포털에 일반휴학 신청
- 나. 학과에 별도 연락하여 알림

#### ◎ 복학 처리 절차(군복학, 일반복학 동일)

- 1. 2월, 8월 중 복학 신청
- 2. 복학자 수강신청 안내 게시물 필수 정독 및 학사지도 행사 실시 시에는 필히 참여(시기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함)
- 3. 일괄 승인함으로 학과에 연락할 필요 없음
- \* 포털 내 복학 미승인 상태라도 수강신청 가능
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요망

### **Attachments:**

• https://computer.kongju.ac.kr/bbs/ZD1140/1410/461091/synapView.do

# 휴학·복학

# 1. 관련 규정

공주대학교 학칙 제62조(휴학절차), 제63조(휴학기간), 제64조(복학), 제65조(퇴학), 학사운영규정 제27조(휴학), 제28조(복학)

# Ⅱ. 휴학

# 1. 휴학종류

휴학종류	일반휴학	질병휴학	병역휴학	육아휴학	창업휴학
흐하사유	여하하	없는 식명 박생으로 연			재학 중 창업을 수행 하기위한 <i>휴</i> 학
휴학기간	질병휴학 포함하여 3년(6학기)이내 ※대학원 4학기 이내		2년	2년(학생당)	2년
제출서류	었으	<u> </u>	병무청장이 발행 한 입영통지서 사 본	전문의가 발행한 임신.출산회 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	창업현장실습 교육(변환 이발행탄창업휴학승인서

# 2. 신청기간

가. 학기 개시 전: 1학기 휴학(2월), 2학기 휴학(8월)

나. 학기 중: 수업일수 3/4 이내

※ 질병휴학, 병역휴학, 육아휴학, 창업휴학은 수업일수 3/4 이후에도 신청 가능

※ 수업일수 4분의 3까지 휴학 승인이 완료되어야 해당 학기 휴학 처리

# 3. 휴학절차

포털 휴학 신청 증빙서류 학과 제출	➾	증빙서류 검토 및 승인	⇨	최종 승인 (학장 허가)
학생		학과		단과대학 행정실

### 4. 유의사항

### 가. 일반휴학

- 1) 일반휴학 신청시 복학예정 학년도 학기를 설정하여 휴학신청 가능, 미설정시 1년 단위 신청, 1년 휴학 신청 후 1학기 뒤 복학 가능
- 2) 신입생의 1학년 1학기에는 가정사정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음
- ⇒ 1학년 1학기 일반휴학 불허(편입생은 3학년 1학기 일반휴학 가능)
- 3 ) 일반휴학 후 휴학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
- 4 ) 수업연한 초과 등록학생의 경우 당해학기 수강필수 과목이 없으면 1학기 특별휴학 가능(공문 받아 처리)(학칙 제63조 3항)

### 나. 성적

- 1) 휴학 학기의 수강자료는 삭제하며, 성적은 처리되지 않음
- 2) 수업일수 3/4선 이전 휴학자에게 콜라주 1,2블록 과목 성적이 부여된 경우에도 휴학학기의 수강 자료 및 성적은 삭제

#### 다. 등록금

- 1)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복학 학기로 이월
- ※등록금 인상시 추가 납부 의무 없음, 3/4선에 휴학해도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

### 라. 기타

- 1) 휴학신청한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 학적변동조회에서 본인의 휴학처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
- 2) 미반납한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휴학신청 불가
- 3) 통합정보시스템상에 수업일수 1/4, 수업일수 3/4에 휴학신청 후 미승인 상태로 계류중인 학생이 없는지 확인

### 5. 병역휴학 처리 기준

- 가. 일반휴학기간 중병역의무발생으로 입영하는 경우학생이 병역휴학을 신청하여야함
  - 1) 일반휴학이 시작된 학기에 입대하여 그 학기 3/4선 이전에 병역휴학을 승인받으면 해당 학기는 병역휴학한 학기가 됨(3/4선 이후에 신청 및 승인 받으면 다음 학기부터 병역휴학 시작)
  - ※ 학생이 일반휴학으로 승인 받고 군 복무를 하였던 경우, 지나간 일반휴학 학기를 병역휴학으로 정정하려면, 학사지원과로 휴학종류 변경 요청(군입대 전 반드시 병역휴학 신청하고 입대할 수 있도록 지도)
  - ■첨부서류: 병적증명서

- 나. 병역휴학자가 군 복무 중에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
  - 1) 학과에서는 학사지원과로 휴학변경 요청
  - ■첨부서류: 병적증명서(귀가증으로 갈음 가능)
- 다. 병역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햐 함
  - 1) 병역휴학(2년)+복학유예기간(전역 후 1년 이내) => 병역휴학 기간 최대 3년
  - 2) 학생은 포털에서 병역휴학 기간 2년 이내로만 신청할 수 있음
- 라. 군대에서 부사관(하사)으로 복무 시 전역예정일까지 휴학 기간 연장 가능
- 1) 학사지원과로 병역휴학 연장 요청
- ■첨부서류: 군경력증명서, 인사자력표, 또는 '복무확인서와 전역예정증명서'로 갈음 가능
- \* 입대일, 부사관(하사)임관일, 전역예정일이 확인 가능해야함

# Ⅲ. 복학

- 1. 시기
  - 가.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시
  - 나. 병역휴학자는 전역 후 1년 이내
  - 다. 전역예정자로서 휴가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 3/4 출석이 가능한 경우 전역일 이전에 복학 가능
- 2. 신청기간
- 가. 학기 개시 전: 1학기 복학(2월), 2학기 복학(8월)
- 나. 학기 중: 매학기 수업일수 1/4 이내
- 3. 복학절차



### 4. 유의사항

- 가. 역학기 복학생의 경우(예 1년 휴학신청 후 1학기가 지나 복학) 교육과정 이수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나. 수업일수 1/4 경과시 복학신청 불가능
  - 수업일수 3/4 미충족하는 경우 F학점(학칙 제83조 ④항)

